

충청북도학사설치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2. 3. 7.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안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26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27일

다. 상정일자 : 제76회 임시회

· 제1차 내무위원회(1992. 3. 5.)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국장 김용덕)

가. 제안이유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될 향토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학사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학사운영 수탁법인인 제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 및 제규정은 제정되었으나 설치주체인 도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의 설치근거 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학사설치의 목적, 위치, 기능을 규정
- 학사운영을 제단법인 충북학사에 위탁 운영
-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도비로서 지원할수 있도록 함
- 학사시설을 목적외 사용하는 등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학사운영 상황을 도지사가 검사 또는 감독할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정천현)

충청북도 학사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 충북학사는 충북출신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입사케하여 수학에따른 숙식등 제반편의를 제공하므로서 면학의욕을 고취시키고 장차 충북 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향토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바
-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정관및 제규정은 제정되어 있으나 설치주체인 도에는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제15조에 의거 이의 설치및 운영방안과 지도감독의 근거를 마련 재단법인 충북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져 하는것으로서 충청북도 학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승인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없음

6. 수정안의 요지:

제 안 안	수 정 안
제 7 조(사업승인등) 1항 1. 학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 7 조(사업승인등) 1항 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7. 심사결과 :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 7 조 1항
조문중 " 전부 또는" 자구를 삭제토록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참석 9 인, 찬성 9 인)

8.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가. 충청북도 학사설치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안

나. 수정안조문 대비표